

# 202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

선정사업 안내서

노사가 함께 “더 좋은 일터”를  
만들어가는 사업장을 찾습니다



# I

## 사업목적



>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·지원

- 이를 통해 상생·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



## 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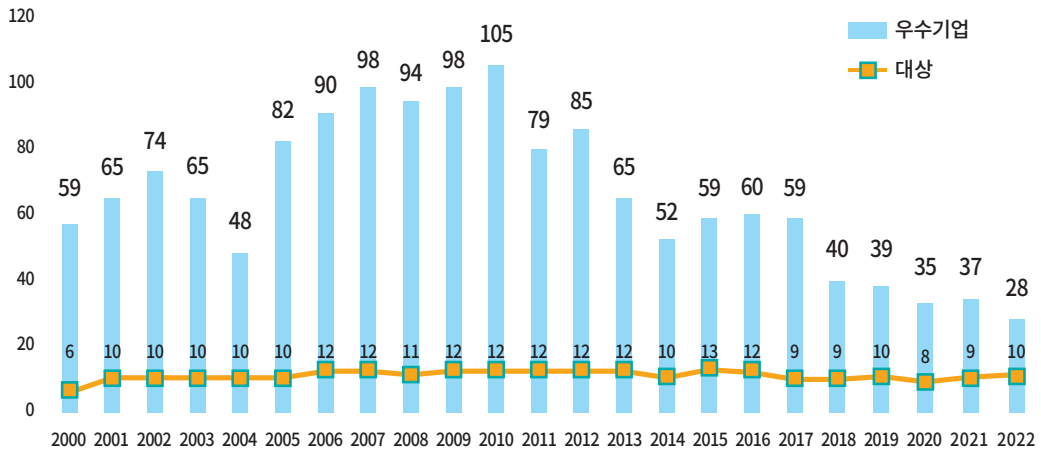
# 사업경과



- > '96년부터 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을 선정, 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 중 탁월한 기업에게 「노사화합대상」 시상
- > '00년, 「신노사문화우수기업」 및 「신노사문화대상」으로 명칭 변경
- > '05년, 「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」으로 변경
- > '08년부터 「노사문화우수기업 및 大賞」 선정업무를 노사발전 재단에 위탁·수행



###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현황



※ '00년~'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,516개사, 노사문화大賞 총 241개사 선정·시상

### Ⅲ

#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

## 기본 방향

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 
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·지원

## 1.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신청

### ① 신청자격

- ▶ (우수기업)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공고일 기준)
  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
- ▶ (大賞) '21~'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
**[결격사유]**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

## 2 신청방법

### ▶ 신청기간

- 우수기업 : 2023. 3. 8.(수) ~ 4. 7.(금)
- 大 賞 : 2023. 7. 17.(월) ~ 8. 18.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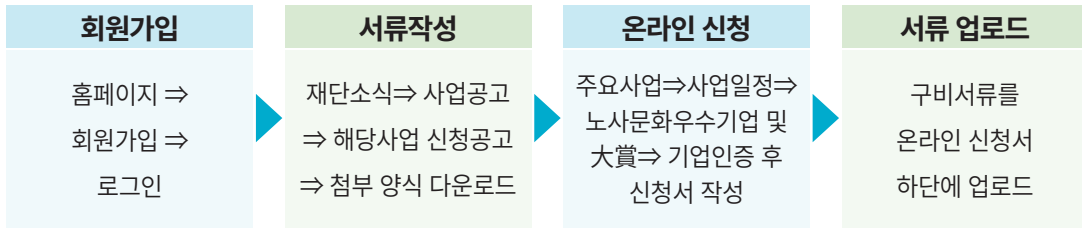
### ▶ 신청서류

번호	구비서류	서류양식	작성방법
1	지원신청서	붙임 1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	붙임 2	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(A4 50페이지 이내)
3	추진실적 증빙자료	-	PDF 파일로 제출
4	납세증명서	-	국세청 발급 후, 스캔본 제출

\* <붙임1> 신청서 및 <붙임2>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

### ▶ 신청방법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osa.or.kr>)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



- 반드시 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

\*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

- 중소기업·대기업·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

·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###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\* 기준

- ▶ 제조업 : 500명 이하
- ▶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: 300명 이하
- ▶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: 200명 이하
- ▶ 그 밖의 업종: 100명 이하

\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
-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



## 2. 심사 및 선정

### ① 심사위원회 구성

#### ▶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大賞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

- 노사관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

\*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

#### ▶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<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>

- 당연직 위원(2인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 및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이 추천하는 전문가

<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회>

- 당연직 위원(2인): 노사협력정책관,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

###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·선정

#### <1> 사전검증 실시(지방관서)

#### ▶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해당 여부,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

⇒ 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(구제명령) 여부

⇒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

⇒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여부

\* 조사 기간: (우수기업) '21.1.1.~'23.4.7. (우수기업 신청마감일까지)

(大 賞) '21.1.1.~'23.8.18. (大賞 신청마감일까지)

#### ▶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

- 동일 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감점

#### 감점 기준

▶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(1건당 15점)

▶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(1건당 15점)

▶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\*된 경우(1건당 10점)

\*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체불 확정이 되었을 때

\*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은 심사제외



## <2> 1차 심사(서면심사)

▶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서면심사를 실시하여

- 취득점수를 평균하여 만점(1,000점)의 90%(900점) 이상 획득한 사업장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 (1,000점±가감점)
노사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</li> <li>노사관행 개선실적</li> </ul>	100점
노사문화 실천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</li> <li>인적자원 개발·활용</li> <li>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</li> <li>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</li> <li>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</li> <li>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기업(10점)</li> </ul>	5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생협력 및 동반성장</li> <li>노사의 사회적 의무</li> <li>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</li> <li>(가점)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 + 상생협력체결(20점)</li> </ul>	400점
(감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</li> </ul>	100점 한도

\* <붙임 3> 1차 서류심사 기준 참조

## <3> 2차 심사(사례발표심사)

▶ 1차 심사 통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심사

- 사례발표는 8개 지역별 「경진대회」형식으로 개최, 필요시 현지 실시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(700점)
노사관계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및 극복 사례,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</li> </ul>	100점
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영 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,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</li> </ul>	100점
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프로그램 내용, 교육훈련의 만족도 및 효과성, 공정한 인사관리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</li> </ul>	100점
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평균 대비 임금 수준, 급여증가율, 임금 격차 해소 노력</li> </ul>	50점
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복지시설 운영·개선, 작업환경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의 노력 및 효과성, 일·생활 균형 실현</li> </ul>	1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 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, 원·하청 간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,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 정도</li> </ul>	200점
발표태도 및 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표태도 및 노사 대표자 참여도 등</li> </ul>	50점

\* <붙임 4> 2차 사례발표심사 기준 참조



#### <4> 선정

- ▶ 2차 심사에서 만점(700점)의 85%(595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  - 선정된 사업장은 본부의 검증 및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

### ③ 노사문화大賞 심사·선정

#### <1> 대상(大賞) 규모(안)

- ▶ 대통령상 2점, 국무총리상 3점, 장관상 5점 선정 예정이나
  - 최종 시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

#### <2> 1차 심사(서류심사)

- ▶ 노사문화大賞 신청 사업장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'23년 시상규모의 1.3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사례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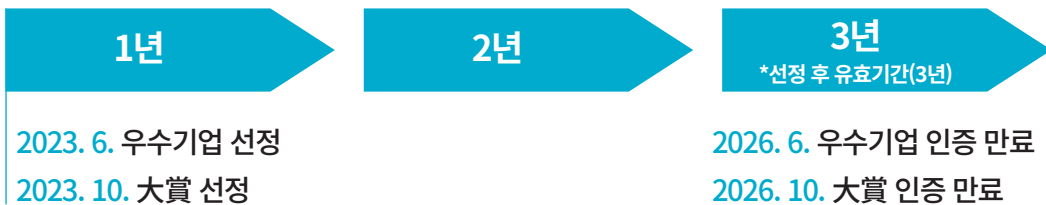
#### <3> 2차 심사(사례발표)

- ▶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측(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)의 수상의사 재확인
- ▶ 1차 심사 통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「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(사례발표 및 질의응답)」를 개최하여 2차 심사 취득점수에 따라 노사문화大賞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
\* 1·2차 심사기준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 적용

### ④ 선정 사업장 지원

- ▶ (유효기간) 우수기업·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



- ▶ (지원내용)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

\* <붙임 5>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





### 3. 선정취소

#### ① 요건 및 효력

##### <1> 선정 취소

▶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 취소

▶ 선정이 취소된 경우, 취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\* 소속 사업장이 선정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##### <2> 선정 철회

▶ 선정 이후 혜택 유효기간 내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철회(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 개최)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해 체불사업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③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④ 중대산업재해(중대재해처벌법) 또는 중대재해(산업안전보건법)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⑤ 부당노동행위(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) 또는 고액임금 체불(10억원 이상)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⑥ 사회적 물의 발생으로 수사·특별감독 실시 결과, 노동관계법 10건 이상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

▶ 선정이 철회된 경우, 철회된 날로부터 우대지원 혜택 중단 및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\* 소속 사업장이 선정철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#### ② 시기

▶ 유효기간(3년) 동안 심사위원회 개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여 결정

#### ③ 절차

▶ 매 반기 말 또는 사유 발생 시에 과거 3년간의 결격사유 조회(청·대표지청) → 결격 사유 발생 확인 → 해당 사업장 조사(지방관서) → 심사위원회\* 개최 및 심의 결정(관할 지방청·대표지청·본부) → 취소 또는 철회

\* 선정당시 또는 최근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·운영 원칙, 청(대표지청)은 심사결과를 본부·지방관서 및 국제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



## 4. 시상 및 홍보

### ① 선정 공고

- ▶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

### ② 시상식 및 인증서·인증패 전수

- ▶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·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▶ 노사문화大賞 시상식: 12월 중 개최

### ③ 홍보

- ▶ 공고, 사례집 발간,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·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
- ▶ 언론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 게재
- ▶ 우수기업 및 大賞 수상기업의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노사문화 모범사례 전파



## 5. 추진일정

구분	추진일정	비고
▪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	3.8.~4.7.	▪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(www.nosa.or.kr)
▪ 서류검토 및 사전검증	4.10.~4.14.	▪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감독관)
▪ 심사준비	4.13.~4.21.	▪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, 노사발전재단 ▪ 감점기준 및 결격사유 등 조회
▪ 지역1차 심사(서류심사)	4.24.~5.12.	▪ 8개 지방청·대표지청별로 심사
▪ 현지 실사(필요시)	5.15.~5.26.	▪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
▪ 지역2차 심사(사례발표)	5.29.~6.9.	▪ ‘경진대회’ 형식으로 개최
▪ 심사결과 보고	~6.13.	▪ 즉시 본부 보고(청·대표지청)
▪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	6.29.(예정)	▪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▪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	7월 중	▪ 권역별 계획 수립
▪ 노사문화 大賞 신청접수	7.17.~8.18.	▪ ’21년~’23년 우수기업 ▪ 노사발전재단
▪ 심사준비 및 사전검증	8.21.~8.30.	▪ 노사발전재단
▪ 大賞 1차 심사(서류심사)	8.31.~9.6.	▪ 13개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
▪ 현지 실사	9.11.~9.22.	▪ 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▪ 大賞 2차 심사(사례발표)	10월 초	▪ 大賞 선정 및 훈격 결정
▪ 노사문화大賞 공고	10.20.(예정)	▪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
▪ 우수사례 벤치마킹	11월 중	▪ 노사문화大賞 수상기업 벤치마킹
▪ 사례집 제작 등	11~12월 중	▪ 사례집 제작·배포
▪ 시상식 개최	12월 중	▪ 시상 및 합동시상식 병행 ▪ 보도자료 배포

※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 등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


# 신청서 작성요령

## 1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가. 신청서와 부속서류인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

\* 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

나.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소정양식에 따라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 
개조·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실적은 계량화하여 기입하고  
그 내용을 요약 설명

다. 해당 사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시기를 명확히 표시

## 2.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

① 신청구분 : 신청단위가 기업단위(기업 전체)인지 사업장단위(공장, 지사)인지 표시

② 기업구분

- (중소기업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 
대기업으로 간주

업종	규모	비고
제조업	500명 이하	중소기업 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업, 과학·기술서비스업, 보건업·사회서비스업	300명 이하	
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	200명 이하	
위 업종 외의 산업	100명 이하	

- (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 
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함

③ 사업체명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)을  
한글과 영문(영문인증서에 사용됨)으로 정확하게 기입

③-1, ③-2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 
사업주의 성명과 직책(직위)를 기입

- ④ 업 종 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를 기입(예, 화학제품제조)
- ⑤ 소재 지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주소를 기입
- ⑥ 노동조합 : 노동조합 유무, 복수노조 유무, 상급단체 기입, 노동조합명(노사협의회명) 기입
- ⑥-1, ⑥-2 :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
- ⑦ 노동자수 : 신청일 기준 노동자수 합계(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수)를 기입하고 노조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수를 괄호 안에 기입
- ⑧ 자본금 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⑨ 연매출액 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- ⑩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: 기업단위는 본사,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입
- ⑩-1 산재보험관리번호 :
  - \* 사업장 단위 신청시 ⑩-1에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 - \* 기업단위 신청시 ⑩-1에 본사의 산재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하고 ‘⑬사업장현황’에서는 소속된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- ⑩-2 고용보험관리번호 :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재확인 위해 기재 필수
- ⑪ 사업개시일 :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  
(합병에 따른 사업 승계 시는 그 이전 사업 개시일 기재)
- ⑫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시기 : 우수기업 선정 시기를 명시(예: ‘12년)
- ⑬ 사업장현황 : 기업단위의 경우 여러개의 사업장(공장, 지사 등)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기입
- ⑭ 기업단위는 사업주가 서명하고, 사업장 단위는 사업장 대표자가 서명
- ⑮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가 서명

※ 모든 업무연락은 e-mail을 이용하므로 e-mail주소를 정확하게 기재

##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### 1. 사업장 일반현황

- 노사개요

사업체	노동조합(노사협의회)
▪ 명 칭:	▪ 명 칭:
▪ 소재지:	▪ 상급단체:
▪ 대표자:	▪ 대표자:
▪ 노동자수:	▪ 조합원수:
▪ 업종 및 주요생산품:	▪ 설립일:
▪ 설립일:	▪ 임<단>협만료일:
▪ 연락처:	▪ 연락처:
▪ 연혁:	▪ 연혁:

- 노사관계 변천사

- ※ 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천 과정을 약술

- 노사관계 안정요인 및 계기

- ※ 갈등을 겪은 후 안정되었다면 그 배경, 계기, 안정요인 등을 기술

- ※ 갈등 관계가 없이 계속 안정을 유지하였다면 안정요인 등을 기술

## 2. 노사상생협력 추진 체계도

- ※ 노사상생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및 비전 등을 기술
- ※ 현재 운영중인 갈등관리 방식(체계) 등을 기술

## 3. 기업경영 현황

※ 단위사업장의 경우, 기업의 총액도 함께 기술

(단위: 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
1. 연간 매출액			
- 연간 매출액(증가율)			
2. 당기 순이익			
- 당기 순이익(증가율)			
3. 1인당 노동생산성 (매출액/전체 노동자수)			
4. 인건비 총액			
-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			
5. 임금			
- 전 직원 평균임금			
- 평균임금 중 변동급 비중			
- 신입사원(남성) 평균임금			
- 신입사원(여성) 평균임금			



## 4. 노동환경 현황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
1. 고용			
- 노동자 수			
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			
- 이직률			
- 명예퇴직 실시여부			
- 비정규직 노동자 수			
- 여성 노동자 수			
- 여성 관리자 수			
- 장애인 노동자 수			
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			
2. 노동시간			
- 주당 평균 노동시간			
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			
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			
3. 일·생활 균형			
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			
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			
4. 안전보건			
- 산업재해 발생건수			
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			
5. 상생협력			
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		
- 협력사와 동반성장 정책수립 여부			

## 5.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※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순서대로 기술하되, 세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실적도 포함

※ '21.1월-신청시점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

### [요약자료]

대항목	세 부 항 목	추진실적(신명조 13p) (요약하여 개조식 기술)
I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•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 (요약)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• 추진실적 기술(요약)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• 추진실적 기술(요약)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1차 서류심사 기준의 항목순서에 따라 한글(신명조), A4종 형태로 5쪽 이내 작성

### [심사자료]

대항목	세부항목(신명조 13p)	추진실적(신명조 13p)
I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(신명조 11p)	•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• 추진실적 기술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• 추진실적 기술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1차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글(신명조), A4 형태로 50쪽이내 작성하되 추진실적 증명자료는 뒤편에 붙임 순으로 첨부

## 1차 서류심사 기준

▪ 사업체명:

위원명:

(인)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총점		1000					
I. 노사 관계	<b>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</b>	50					
	• 대립·갈등적 요소 극복 사례						
I. 노사 관계	<b>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</b>	50					
	• 개선이유 • 노사공동 협의 개선여부 • 개선내용 - 구체적 개선내용과 단협·취업규칙 개정 여부						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<b>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</b>	100					
	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•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(노사공동워크숍, 노사관계진단, 일터혁신 관련 교육 및 컨설팅, 설문조사, 벤치마킹 등) 실시 관련 - 프로그램 도입 이유 및 의사결정 과정 (노사공동기구 설치·운영 등) - 각종 프로그램별 실시 성과 -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등						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(2) 현장개선활동에 노동자 참여 정도 • 노동자나 노조 의견수렴 후 현장 개선 활동 실시 여부 등 • 의사결정권을 작업부서 단위로 이양한 정도, 이양된 권한의 내용·성과 등 • 현장 노동자들의 품질관리나 기계장비 보전업무 (예: My machine 운동) 수행정도 등						

대항목	세 부 항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<b>2. 인적자원 개발·활용</b>	100					
	(1) 프로그램의 내용의 충실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종, 직급, 연령, 성별 및 내·외부, 온·오프, 신입·재직자·전직자 교육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시행여부</li> <li>프로그램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 여부</li> <li>-노동자 및 노조 의견수렴 정도</li> </ul> </li> <li>프로그램 효과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노동자 만족도, 효과성(생산성 향상 등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	(2) 투자규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혜폭: 년도별 교육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(수강노동자/ 상시노동자)</li> <li>훈련시간: 연간 노동자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</li> <li>훈련투자규모: 교육훈련비용/임금총액 ※재무제표상 교육훈련비용 기재</li> </ul>						
	(3) 공정한 인사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용·배치·이동·승진·평가 등의 공정성</li> <li>- 불합리한 인사관리 체계 개선</li> </ul> </li> <li>생산직/영업직 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</li> <li>여성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</li> </ul>						
	(4) 고용안정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노력,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</li> <li>전직지원 등의 고용안정지원</li> </ul>						
	<b>3.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</b>	50					
	(1) 적정 임금수준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입사자 임금수준(초임수준)</li> <li>1인당 연평균 급여 수준(산업평균 수준 여부)</li> <li>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가율/물가상승율 반영 정도</li> </ul>						
(2) 임금격차 해소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적정성</li> <li>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해소 노력</li> </ul>							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<b>4.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</b>	150					
	(1) 근로복지 시설운영 및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휴게실, 직장 동호회 지원, 체육시설 설치, 휴양소, 직장보육시설, 기숙사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</li> </ul> </li> <li>•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</li> </ul>						
	(2) 근로복지기금 및 자금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적 및 비율</li> <li>• 저소득 노동자 지원, 주택자금, 학자금 지원 등 기업별 복지제도 운영실적</li> </ul>						
	(3) 장시간 근로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정노동시간 준수 여부</li> <li>• 노동시간 단축 및 효과성, 노사간 합의 여부 등</li> <li>•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노력</li> <li>• 유연근무제 활용률, 연차휴가 사용률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노력 정도</li> </ul>						
	(4) 근무환경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사례, 작업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례</li> <li>• 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 등</li> </ul>						
	<b>5.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</b>	100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진 노사문화 실천에 따른 경영성과, 분야별 우수사례 및 향후 계획 등 (지난 2년간 변화된 상황 중심)</li> <li>• 전반적인 우수성 및 독창성</li> <li>• 정착노력, 개선실적 및 성과</li> <li>•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가능성</li> </ul>						
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가점	+10						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III. 노사의 사회적 책임	<b>1.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</b>	250					
	(1) 기업내 상생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, 장애인, 여성노동자 등 취약 계층 처우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의 양보·배려</li> <li>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</li> <li>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</li> </ul>						
	(2) 원·하청간 상생협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·하청 노사간 공동워크숍, 상생협력관계 진단, 상생 협력 교육 및 컨설팅, 공동훈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</li> <li>원·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천협약,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, 공유가치 창출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</li> <li>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원·하청간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</li> </ul>						
	(3) 원·하청간 공정거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력사와 동반성장정책 수립</li> <li>협력사와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</li> <li>공정한 구매/조달시스템 운영, 적정 납품가 보장</li> <li>상생결재시스템 이용</li> </ul>						
	<b>2. 노사의 사회적 의무</b>	100					
	(1) 지역사회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</li> <li>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노사의 사회봉사활동</li> <li>지역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반영</li> <li>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유무(대기업)</li> </ul>						
	(2) 지역사회 투자 및 기여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업체 선정시 지역공급자 배려 정책</li> <li>노동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</li> <li>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</li> <li>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(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)</li> </ul>						
	<b>3.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</b>	50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의무고용,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 정도</li> <li>퇴직연금 가입여부</li> <li>고용창출 실적 노력</li> </ul>						
	(가점)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구성+상생협력 체결	+20					
(감점)	발생 건당 감점	-100	(최대 -100)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</li> <li>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</li> <li>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(기소송치 제외)</li> </ul>						( )건 x 15점 ( )건 x 15점 ( )건 x 10점

## 2차 사례발표 심사기준

평가 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총점		700					
① 노사관계 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사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와 극복 사례(최근 2년)</li> <li>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 여부 및 구체적 개선사항</li> </ul>	100					
② 열린경영 및 노동자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</li> <li>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</li> <li>선진 노사문화 실천사례 및 향후 계획</li> </ul>	100					
③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례</li> <li>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 만족도, 효과성 등</li> <li>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, 전직지원 등 고용유지노력을 통한 고용안정 실천사례</li> <li>공정한 인사관리 운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</li> </ul>	100					
④ 임금 적정성과 격차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가반영 임금인상 등 적정 임금수준 보장</li> <li>임금격차 적정성과 격차해소 노력</li> </ul>	50					
⑤ 근로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휴게실·동호회지원·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주요 복지 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</li> <li>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등 작업환경 개선 사례</li> <li>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노력 및 노동시간 단축 효과성</li> <li>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</li> </ul>	100					
⑥ 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과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노력</li> <li>-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개선</li> </ul> </li> <li>원·하청간 공동훈련, 동반성장 협약체결,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원·하청간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, 공정한 구매조달시스템 운영, 상생결재시스템 운영 등</li> <li>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정책수립</li> <li>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여</li> <li>장애인의무고용 및 고령자기준고용을 준수, 퇴직연금가입 등 노동정책 이행수준</li> </ul>	200					
⑦ 발표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표태도 및 기법</li> <li>노사 대표자 참여정도 감안 등</li> </ul>	50					

※ 사례발표심사 자료는 파워포인트(30매 이내)로 작성하여 별도 요청일까지 제출

##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 원 내 용	노사문화 대 상	노사문화 우수기업	담당기관
<b>&lt; 행정상 우대 &gt;</b>			
▪ 정부포상	대통령·국무총리상, 고용노동부장관상	인증서·인증패	고용노동부
▪ 정기근로감독	면 제	면 제	
▪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	2.5점 가점	2.5점 가점	
▪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
▪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	제작·송부	제작·송부	
▪ 일반응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0.5점 가점	국 방 부 (재정회계담당관)
▪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	0.1점 가점	0.1점 가점	방위사업청 (계약제도발전과)
▪ 세무조사 유예 (모범납세자에 한함)	1년(2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국 세 청 (납세자보호담당관)
▪ 납세담보 제공 면제 (모범납세자에 한함)	2년(3년: 국무총리상 이상)		
▪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중소기업벤처부 (인력육성과)
▪ 현역인원배정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
▪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	최우선 선정	2점 가점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지원계획부)
▪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	5점 가점		
<b>&lt; 금융상 우대 &gt;</b>			
▪ 대출금리	0.1% 우 대	0.1% 우 대	농협
▪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 대	우 대	신한, 하나, 국민
▪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 대	우 대	신용보증기금

※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

<참고>

## ◎ 노사문화 우수기업 · 大賞 접수처: 노사발전재단

(우)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

▪ 문의 및 접수: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

Tel. 02-6021-1061, 1062

Fax. 02-6021-1488

<https://www.nosa.or.kr>

## ◎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

서울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726	부산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97
서울강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465-8416	부산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559-6618
서울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142-8490	부산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309-1589
서울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077-6139	창원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5-239-6557
서울남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639-2232	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1839
서울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950-9819	양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370-0989
서울관악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282-9048	진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760-6505
충부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72	통영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650-1916
인천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540-7966	대구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70
부천시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714-8746	대구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3-605-9056
의정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850-7754	포항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271-6802
고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931-2820	구미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4-450-3518
경기지청(대표지청)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275	영주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639-1153
성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740-6705	안동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851-8032
안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63-7341	광주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11
안산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12-1937	전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63-240-3373
평택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1-646-1126	익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839-0016
강원지청(대표지청)	근로개선지도과	033-269-3579	군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450-0527
강릉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650-2555	목포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280-0139
원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769-0806	여수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650-0197
태백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33-550-8628	제주근로개선지도과	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	064-728-7124
영월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33-371-6221	대전지방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73
			청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299-1163
			천안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1-560-2923
			충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840-4067
			보령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1-930-6126
			서산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41-661-5647